#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46 제출년월일: 2019. 07.

제 출 자: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○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평창군 음식판매자동 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관련법규 조항 변경(안 제1조)
  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 ⇒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
- 나. 영업장소에 전통시장을 추가(안 제2조)
- 다. 첨부서류 조항 변경(안 제3조)
- 라. 영업장소 지정 신청 신설(안 제4조)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식품위생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관계부서 협의 : 해당사항 없음

# 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19. 4. 2. ~ 2019. 4. 22.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 요인 없음.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#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영업장소)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 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(이하 "음식 판매자동차 영업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
  - 2.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,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
  - 3. 「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」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장

- 4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
- 5. 그 밖에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, 다른 법령과의 관계, 이용자의 안전,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- 제3조(첨부서류)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(이하 "시설관리자 등"이라 한다)가 음식자동차판매업 영업을 하 려는 경우: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
  - 2.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: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
- 제4조(영업장소 지정 신청) ①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

상황과 영업신청자의 수요, 다른 법령과의 관계, 이용자의 안전, 교통 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

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|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<br>성 별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업의 종류<br>[ ]휴게음식점영업 [ ]제과점영업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     | 호를 적고,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위치도</b><br>(시진 및<br>정확한<br>위치 표시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「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# 평창군수 귀하

#### 유 의 사 항

- 1.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,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,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.
- 2.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.



## <붙임 1> 관계법령

#### 식품위생법

제37조(영업허가 등)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2. 3.>

#### 식품위생법 시행규칙

- 제42조(영업의 신고 등)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(이하 "신고관청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9. 1., 2011. 8. 19., 2012. 1. 17., 2012. 5. 31., 2014. 8. 18., 2014. 10. 13., 2015. 8. 18., 2015. 12. 31., 2017. 12. 29.>
  - 1. 교육이수증(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
  - 2. 제조·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(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하다)
  - 3. 시설사용계약서(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)
  - 4.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성적서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·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5. 삭제 <2012. 5. 31.>
  - 6.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(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 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만 해당한다)
  - 7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(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해당한다)
  - 8.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(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 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9. 수상레저사업 등록증(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10.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(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의 영업,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·판매업의 영업,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11.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(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의 영업,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·판매업의 영업,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12.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(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13. 삭제 <2016. 6. 30.>
  - 14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・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

도인 소형·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 동차(이하 "음식판매자동차"라 한다)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

15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 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(영 제21조제8호가목, 나목,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[별표 15의2] <개정 2017. 12. 29.>

####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(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)

- 1. 유원시설: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(이하 이 호에서 "유원시설업 영업장"이라 한다)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(이하 이 표에서 "휴게음식점영업등"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
  - 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(이하이 호에서 "유원시설업자"라 한다)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
  - 나.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- 2. 관광지 등: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(이하 이 호에서 "관광지등"이라 한다)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
  - 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·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·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(이하 이 호에서 "시설운영자"라 한다)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관광지등 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 - 나.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- 3. 체육시설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(이하 이 호에서 "체육시설"이라 한다)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
  - 가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(이하 이 호에서 "민간체육시설업자"라 한다)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
  - 나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 - 다. 민간체육시설업자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,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- 4. 도시공원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
- 5. **하천:** 「하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  - 가. 「하천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
  - 나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 ·개축·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(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)를 받은 자
    - 1) 시·도지사
    - 2) 시장・군수・구청장
    - 3)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
- 6. 학교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이 호에서 "학교"라 한다)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 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
- 7. 고속국도 졸음쉼터: 「도로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(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- 8. 공용재산: 「국유재산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
  - 가. 「국유재산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
  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「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・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 명하는 서류
- 9.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: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- 10. 그 밖에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 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: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

###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(약칭: 전통시장법)

- 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12. 11., 2013. 5. 28., 2015. 11. 20., 2017. 2. 8., 2017. 7. 26., 2018. 6. 12.>
  - 1. "전통시장"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・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,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・군수・구청장"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.
    - 가.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
    - 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 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
    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#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

# 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.

# 4. 작성자

| 작성자 | 평창군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| 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연락처 | (033) 330 - 2340 |  |